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811-1996-154816



[건물]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-39외 3필지 내제2층비16호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3)	1987년8월5일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-39, 179-40, 179-73, 179-74	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24평 2층 24평 내 2층 비16호 조표제40451-3호 12평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3월 09일 전산이기
열 램 용				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87년8월5일 제1980호	1979년1월10일 매매	소유자 한찬중 421128-*****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79-40 비16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3월 09일 전산이기
2	소유권이전	2015년6월17일 제75004호	2005년10월16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	소유자 한혜경 720224-*****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0번길 20, 다동 102호(재송동, 한솔빌라)
3	소유권일부이전	2024년10월18일 제72239호	2021년6월10일 사해행위취소	공유자 지분 11분의 2 한진석 780111-*****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32, 비-16호(재송동, 사호연립)

[건물]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-39외 3필지 내제2층비16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대위자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, 502,503호(도봉동, 한밭법조타워) 대위원인 2021년 5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
4	3번한진석지분강제 경매개시결정	2025년2월7일 제185564호	2025년2월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429 4)	채권자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110111-5079549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, 502, 503호 (도봉동, 한밭법조타워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열람용 이 하 여 백 용
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열람일시 : 2026년02월12일 17시13분12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811-1996-154816

[건물]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-39외 3필지 내제2층비16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한진석 (공유자)	780111-*****	11분의 2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32, 비-16호(재송동, 사호연립)	3
한혜경 (공유자)	720224-*****	11분의 9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0번길 20, 다동 102호(재송동, 한솔빌라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2월7일 제185564호	채권자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	한진석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